보통산공시법오늘의 자가진단교수: 박정환제2장 등기소등/제3장 등기절차 총론과정: 기본이론(5주차)

- 1.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,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.(O, X)
- 2. 부동산의 여러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한 최초의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에게 관할 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하여 야 한다.(O, X)
- 3.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며 순위번호란에는 표제부에 등기한 순서를 기록한다.(O, X)
- 4.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부의 종류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및 집합건물등기부로 구분한다. (O, X)
- 5.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각 구분건물마다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.(O, X)
- 6.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표제부를 1동의 건물에 두고 전유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만 둔다. (O, X)
- 7. 구분건물에 대지권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등기기록의 갑구 및 을구에 등기하여야 한다.(O, X)
- 8.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이해관계인에 한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.(O, X)
- 9.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. 다만,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(O, X)
- 10. 甲과 乙은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내에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.(O, X)
- 11. 절차법상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하고, 실체법상 권리의무에 대해서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.(O, X)
- 12. 부동산이 甲→乙→丙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명의가 甲에게 남아 있어 丙이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, 丙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.(O, X)
- 13. 甲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설정된 乙명의의 근저당권을 丙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, 등기의무자는 乙이다.(O, X)
- 14. 민법상 조합의 부동산은 조합명의로 등기할 수 없고, 조합원의 합유명의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.(O, X)
- 15.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태아의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.(O, X)
- 16. 丙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甲과 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, 丙은 근저당권설정등 기신청에서 등기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.(O, X)
- 17.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패소한 등기의무자가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.(O, X)
- 18. 건물임차권의 기간만료로 인한 임차권말소등기는 임차인이 등기권리자, 임대인이 등기의무 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한다.(O, X)
- 19.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.(O, X)
- 20. 건물에 대하여 甲, 乙간의 매매 후 등기 전에 매수인 乙이 사망한 경우 乙의 상속인 丙은 甲과 공동으로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(O, X)
- [정답] 1.O 2.X 3.X 4.X 5.X 6.X 7.X 8.X 9.O 10.O 11.O 12.X 13.O 14.O 15.O 16.O 17.X 18.X 19.X 20.X